

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. 13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7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제정위원회(2000. 1. 19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경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와의 상이한 일부 관련법 조항 및 내용을 보완코자 하며
-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공단의 비상임 감사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고 개정(안 제7조④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공단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(안 제8조①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원자격기준을 강화함(안 제8조②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⑥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둠(안 제8조⑦항)
- 이사장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경역에 부적당한 자를 추천할 경우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임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음(안 제8조⑧항)
- 당연직 이사를 체육·문화업무담당으로 확대 개정(안 제14조②항)
-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⑥항)
-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변경(안 제17조③항, 안 제21조②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단직원과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지?</li> <li>○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닙니다. 민간인만 지급합니다.</li> <li>○ 4명(이사장, 주차사업본부장, 문화사업본부장,</li> </ul>

○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?

공인회계사)입니다만 공인회계사에 대한 여비 수당을 지급합니다.  
○ 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임·면권을 준 것이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공단직원한테는 지급하지 않을 것임.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

○ 제14조6항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 중 공인회계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의결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70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와의 상이한 일부 관련법 조항 및 내용을 보완코자 하며
-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공단의 비상임 감사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고 개정(안 제7조④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공단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(안 제8조①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원자격기준을 강화함(안 제8조②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⑥항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둠(안 제8조⑦항)
- 이사장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경영에 부적당한 자를 추천할 경우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임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음(안 제8조⑧항)
- 당연직 이사를 체육·문화업무담당으로 확대 개정(안 제14조②항)
-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⑥항)
-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변경(안 제17조③항, 안 제21조②항)

#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·면한다”를 “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”을 “공단관련업무 담당국장 등 7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당해 공단의 임·직원”을 “당해 공단의 임·직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”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”를 “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된다.

⑧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다만,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”를 “다만,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여성·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”을 “여성·체육청소년·문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
제17조제3항 중 "제53조"를 "제63조"로 한다.  
제21조제2항 중 "제51조"를 "제59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임원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④이사과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·면한다.</p> 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 ①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시장, 시의회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한다.</p> <p>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③(생략) ④(생략)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~⑧(신설)</p>	<p>제7조(임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.</p> 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 ①..... ..... .....공단관련업무 담당국장 등 7인..... ..... ..... 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 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⑦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</p>

제9조(임기 및 직무) ①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- ②(생략)
- ③(생략)

제14조(이사회) ①(생략)

②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시의 예산업무,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·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,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③(생략)
- ④(생략)
- ⑤(생략)
- ⑥(신설)

제17조(사업) ①~②(생략)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④(생략)

제21조(결산) ①(생략)

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⑧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 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제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임기 및 직무) ①.....

.....  
.....비상임 감사의.....  
.....

- ②(현행과 같음)
- ③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이사회) ①(생략)

②.....  
.....여성·체육청소년·문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.....  
.....

- ③(현행과 같음)
- ④(현행과 같음)
- ⑤(현행과 같음)

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사업) ①~②(현행과 같음)

③..... 제63 조.....  
.....

- ④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결산)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 제59조.....  
.....